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5.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3월 19일, 윤준병의원 등 20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3월 2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2025.8.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34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2026.4.14.)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
의결)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2026.4.16.) 상정, 찬반토론, 의결(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국회의원 윤준병)

우리나라는 수도권·대도시 중심의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이촌향도 등 인구유출 현상이 심화되었고, 최근에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의 고착화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도 갈수록 증가하면서 현재 농어촌 지역은 인구소멸·지방소멸의 위기에 봉착해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대두되었고, 지난 2020년 빈집 정비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의 여건에 맞춰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도 한계가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농어촌 빈집은 주변 지역의 위생·안전 등의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농촌주민의 삶의 질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위해요소로 인식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 빈집 철거를 위한 유인기제의 부족, 농촌 빈집 정비와 관련된 부처 및 법령의 다원화 등의 문제들로 인하여 종합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의 중장기 계획에 기초한 종합적·체계적인 농촌 빈집 정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제정법을 마련하고, 이에 맞춰 현행법상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빈집정비사업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서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도시 지역의 빈집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농어촌 및 준농어촌 지역의 빈집정비사업은 「농어촌정비법」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농어촌정비법」에 규정된 빈집정비와 관련된 조항을 별도의 제정안인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에 규정하고 「농어촌정비법」에 있는 빈집 관련 조문을 삭제하면서 이에 맞추어 현행법 상 농어촌 빈집 정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의원안) 제정 및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안) 개정에 대한 심사결과에 맞추어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임.

참고로, '25.5.1. 빈집 정비와 관련된 4개 부처(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빈집 문제 대응을 위해 「빈건축물정비특별법」(국토교통부)과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를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빈집 정비 체계를 개편하려는 관련 법률안의 심사 경과 등을 고려하여 자구 등을 수정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의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과정을 거쳤음.

※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4.

제 안 자 : 국토교통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도시와 농어촌 빈집의 행정적 관리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농어촌 빈집 관리 체계를 개편하려는 관련 법률안의 심사 경과를 반영하고, 빈집정비사업과 공통적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해서도 행정적 관할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의 근거 법률을 수정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서는”을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에서는”으로 한다.

다만,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 ----- ----- ----- . 다만, <u>「농어촌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 ----- ----- ----- . 다만, <u>「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② 빈집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	② <u>자율주택정비사업에</u> ----- ----- ----- ----- ----- ----- . ----- ----- ----- -----	② <u>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에서는</u> ----- ----- . ----- ----- ----- -----

큰 도시재생활성화지	-----	-----
역에서 시행하는 자	-----	-----
유택정비사업에 관	-----	-----
해서는 그러하지 아	-----.	-----.
니하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빈집정비사업과 자유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서는”을 “자유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에서는”으로 한다.

다만,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u><단서 신설></u>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 ----- ----- -----.
② <u>빈집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농어촌 및 준농어촌에서</u> 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u>자율주택정비사업에 관하여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에서는</u> ----- -----. ----- ----- ----- -----.